

농지대장 개편 Q&A



Q. 기존 농지원부는 언제까지 발급 가능한가요?

A. 2022년 2월28일까지 기존 농지원부 변경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농지원부 발급은 2022년 4월6일까지 가능합니다.
 ※ 2월28일까지 농지원부 경작구분을 변경신청한 결과에 따라 자경증명서가 발급됨

Q. 농지대장으로 개편되면 기존 농지원부 자료는 열람 가능한가요?

A. 기존 농지원부는 2022년 4월 15일 이후 주소지에서 사본편철되어, 향후 해당 기관에서만 열람 가능
 ※ 농지원부 폐쇄시점의 농가주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폐쇄되며, 폐쇄기관에서 조회·발급 신청 가능

Q. 농지대장 어디서 발급받나요?

A. 지자체 어디서나 발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일 기준으로 1년 내에 경작사실 확인이 완료된 농지 대장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정부24로 발급 가능하며, 무인민원발급기는 해당 시·구·읍·면 농지의 농지대장만 발급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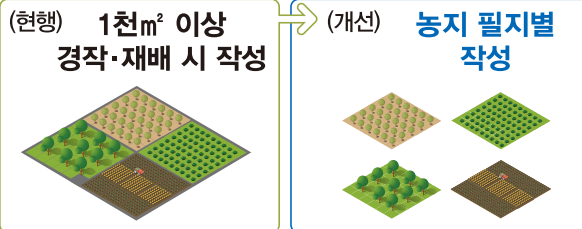
Q. 농지대장 발급 가능자는 어떻게 되나요?

A. 농지대장 발급은 농지 소유자 및 임차인이 발급 가능하며, 제3자는 위임장 첨부로 발급 신청하며, 본인 외 개인정보는 ***처리되어 발급됩니다.
 ※ 2024년부터 개인정보를 제외한 농지대장을 누구나 발급 가능하도록 개선 예정

농지대장 개편 후 알아야 할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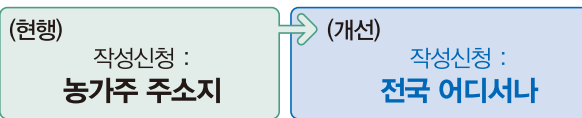
하나. 1천㎡ 미만의 작은 필지도 농지대장 작성·발급됩니다.



※ 주의사항 : 농업인 기준 변동 없음
 - 현행 농지원부는 1천㎡(시설 330㎡)이상 경작·재배 시 작성되므로 농업인 인정 기준과 동일하여 농업인 여부 확인이 가능하나, 개편 후 농지대장은 필지별로 작성되므로 대장유무로 농업인을 바로 확인 하기는 어려움
 - 농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에 신청하는 경우 농업인 자격 별도확인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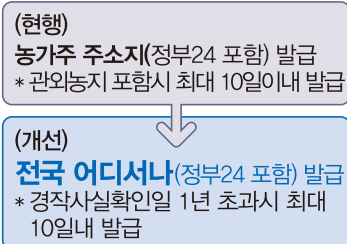
둘. 농지대장 작성 신청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 최초 작성시 농지 소재지에서 경작·이용현황 확인 필요 (최대 10일 소요, 신청서류 미비시 추가 서류보완기간 발생)



셋. 농지대장 발급은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 무인민원발급기는 시·구·읍·면 관할구역 내 농지만 발급 가능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됩니다.

농지원부 주요 제도개선 추진 방안

- 1 공부 명칭 변경 : 농지원부 → 농지대장
 - 2 작성기준 변경 : 농업인(세대) → 농지필지(지번)
 - 3 작성대상 변경 : 농지 1천㎡ 이상 → 모든 농지
 - 4 관할행정청 변경 : 농업인 주소지 → 농지 소재지
 - 5 관리방식 변경 : 직권주의 → 신고주의 *
- * 임대차 계약 발생·변경 시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 부여



1 농지원부는 필지별로 작성됩니다.('22.4.15)

| 현행 | 개선 |
|---------------|-----------------|
| 농업인(세대) 기준 작성 | 농지 필지(지번) 기준 작성 |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되던 농지원부가 앞으로는 필지(지번)별로 작성됩니다.

※ 세대원, 동거인, 주재배작물 등 삭제/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력, 농지전용허가이력 등 농지행정정보 추가

2 농지원부는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됩니다.('22.4.15)

| 현행 | 개선 |
|--------------------|-------|
| 농업인(세대) 1천㎡ 이상의 농지 | 전체 농지 |

작성 기준 농지의 제한을 폐지하고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되어 모든 농지의 현황을 관리하게 됩니다.



3 농지원부는 농지 소재지 행정기관에서 작성·관리합니다.('22.4.15)

| 현행 | 개선 |
|----------------|---------------|
|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 |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 |

기존 농지원부는 사본 편철하여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이 10년간 보관하며 민원인 요청 시 열람 및 출력제공됩니다.

4 농지의 공적장부로서 공부 명칭도 농지대장으로 변경합니다.('22.8.18)

| 현행 | 개선 |
|------|------|
| 농지원부 | 농지대장 |

필지별 농지관리라는 농지 공적장부의 성격을 반영하여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장부 명칭도 변경됩니다.



5 농지임대차 등 이용현황 변경 시 신고 의무화 됩니다.('22.8.18)

| 현행 | 개선 |
|-----------------|--------------------|
| 행정청이 직권으로 공부 작성 | 농지 임대차 등 변경 신고 의무화 |

농지법 상 임대차 가능 농지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변경·해제 되거나,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축사, 곤충사육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농막 등

